이 사 회 의 록 (2012-4차)

(2012. 5. 17. 17:00-18:00)

학교법인 숭 의 학 원

[illegible]	[illegible]	정종화	[illegible]
김상태	[illegible]	[illegible]	강순자

이 사 회 의 록 (2012-4차)

회의소집 통보일자 : 2012. 5. 9.	
이사정수 : 8명	재적이사 : 8명

1. 회의일시 : 2012. 5. 17(목) 17:00

2. 회의장소 : 법인회의실

3. 참석이사 : 8명(윤순희, 백성학, 정동화, 강순자, 남상학, 김상태, 원종학, 김명옥)
   감사 : 1명(안성용)

4. 불참이사 : 없음
   불참감사 : 1명(오용환)

5. 회의안건 :
   - ·의안 제1호 : 2011학년도 각학교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결산(안)
   - ·의안 제2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 관한 건
   - ·의안 제3호 : 대학 교원 인사
   - ·의안 제4호 :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 ·의안 제5호 : 대학 교명 변경(안)
   - ·의안 제6호 : 정관 변경

6. 회의내용

   ㅇ 윤순희 이사장이 재적이사 8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하였기에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김명옥 이사 기도에 이어,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尹順姬	백성학	정동화	남상학
김상태	김명옥	원종학	강순자

○ 이석우 사무국장이 2012-3차 이사회(2012. 4.12) 회의록을 낭독하다.

○ 정동화 이사가 회의록을 그대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동의하자, 김상태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전회 회의록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1. 의안 제1호 : 2011학년도 각학교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결산(안)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1호 2011학년도 각학교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결산(안)을 부의하다.

○ 이석우 사무국장이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의거 결산한 각학교 및 법인의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하다.

○ 또한, 이석우 사무국장이 법인의 2011학년도 결산은 대학 제1별관의 신축공사로 건물을 증가하였고, 집기비품이 노후되어 비품 638건을 폐기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다.

○ 안성용 감사가 지난 2012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법인 감사 2명과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3명이 각학교 감사를 실시한바 제반 증빙문건, 장부정리 및 결산 재무제표가 정확하였고 회계처리가 적정하였음을 보고하다.

○ 원종학 이사가 감사결과 결산회계 처리가 적정하며 정확하다고 하므로 2011학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정동화 이사 동의와 남상학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11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은 대학 제1별관의 신축공사로 건물(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26-8, 지상3층, 지하4층, 연면적 12,070㎡)을 신축하여 대학회계에서 15,095,015,620원 증가 처리하고, 집기비품의 노후 등으로 638건을 폐기 처리하고, 대학 2011학년도 결산 과목 중 예산전용 과목은 교외장학금, 구축물, 기계기구였다고 하며, 2011학년도 각학교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결산(안)은 별첨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尹順熙	[illegible]	정동화	남상학
김상태	[illegible]	원종학	강순자

2. 의안 제2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 관한 건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2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 관한 건을 부의하다.

○ 이석우 사무국장이 2012년 1월 26일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과 숭의여자대학의 사학연금 부담액 및 학교법인의 운영수입 등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다.

○ 김명옥 이사가 사립대학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인의 운영수입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을 제안하다.

○ 원종학 이사가 김명옥 이사 제안에 동의하며, 현재 우리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이 전무하거나 저수익성이며, 우리 법인의 운영수입 등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숭의여자대학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하다.

○ 남상학 이사가 현재 우리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는 숭의여자대학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기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과부에 원안대로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고 정동화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 결의사항

1) 승인신청기간 : 3년 (2012~2014회계년도)

2) 학교부담 승인 신청금액 : 1,080,374,000원

3) 재정여건 개선계획 :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부금 확대방안, 법인 비용 감소방안, 수익용 기본재산을 저수익 구조에서 고수익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illegible]	[illegible]	정동화	남상학
[illegible]	김명옥	원종학	강순자

3. 의안 제3호 : 대학 교원 인사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3호 대학 교원 인사를 부의하다.

○ 이석우 사무국장이 대학 교원의 승진을 보고하다.

○ 강순자 이사가 대학 교원 승진은 업적평가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제청한 사항이므로 대학 교원 인사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동의하자, 백성학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숭의여자대학 부교수 정규석은 2012. 4. 1부로 교수로 승진(임용기간 : 2012. 4. 1 ~ 2022. 2.28 : 정년보장), 부교수 서광적은 2012. 4. 1부로 교수로 승진(임용기간 : 2012. 4. 1 ~ 2024. 8.31 : 정년보장), 조교수 김현석은 2012. 4. 1부로 부교수로 승진(임용기간 : 2012. 4. 1 ~ 2018. 3.31 : 6년)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다.

4. 의안 제4호 :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4호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을 부의하다.

○ 이석우 사무국장이 사립학교법 제14조 4항, 정관 제20조의 4에 의거 추천위원회 위원 5명중 법인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 하여야 한다고 하다.

○ 정동화 이사가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이사 1명과 법인 직원 1명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원종학 이사와 이석우 사무국장을 추천하다.

○ 김상태 이사가 위원 추천에 동의한다고 하자 강순자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에 원종학 이사와 이석우 사무국장을 2012. 5. 18부로 위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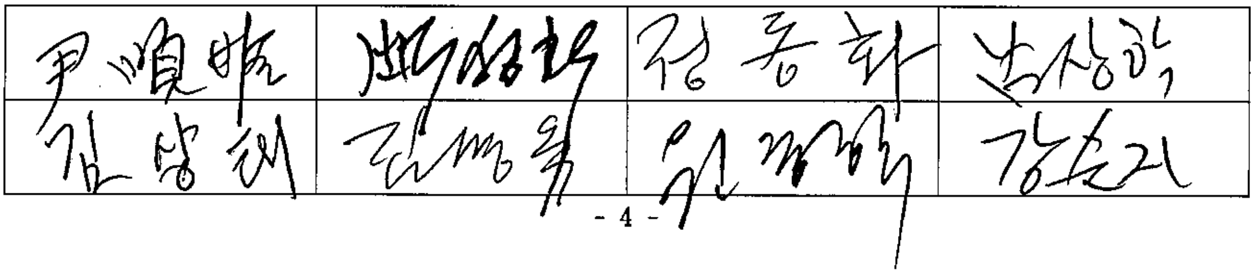

5. 의안 제5호 : 대학 교명 변경(안)

ㅇ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5호 대학 교명 변경(안)을 부의하다.

ㅇ 이석우 사무국장이 숭의여자대학(숭의기획-559, 2011.10.27)으로부터 대학 교명 변경 요청이 있었기에, 고등교육법 제18조에 개정에 근거하여, 동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 교명을 숭의여자대학에서 숭의여자대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하다.

ㅇ 김명옥 이사가 전국 146개 전문대학 중에서 98개 전문대학이 이미 "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재학생 및 동문들이 원하고 있고, 신입생 유치 및 대학간의 경쟁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숭의여자대학의 제청안 대로 "숭의여자대학"을 "숭의여자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자 남상학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ㅇ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교명 변경 승인일부터 "숭의여자대학"을 "숭의여자대학교"로 교명 변경하는 것을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6. 의안 제6호 : 정관 변경

ㅇ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6호 정관 개정을 부의하다.

ㅇ 이석우 사무국장이 의안 제5호 대학 교명 변경이 가결됨에 따라, 숭의여자대학 교명을 변경하기 위해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정관 개정(안)에 따른 세부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하다.

ㅇ 이석우 사무국장이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은 정관 내용에 "숭의여자대학"을 "숭의여자대학교"로, "대학"을 "대학교"으로 변경함을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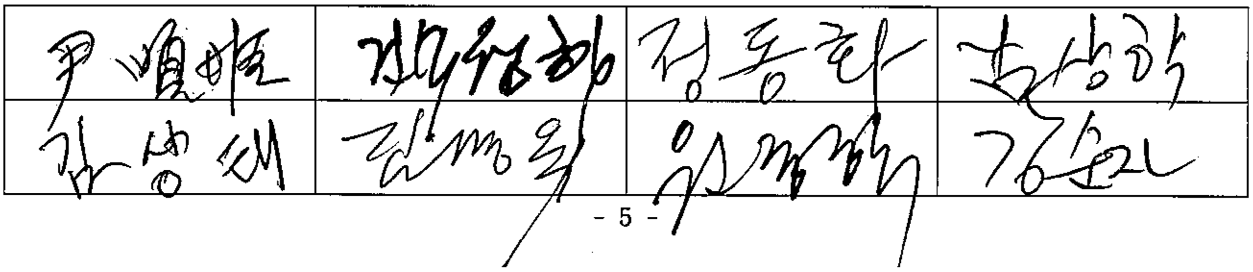

○ 강순자 이사가 정관 개정(안) 안건이 좋다고 제안하고, 남상학 이사가 대학 교명 변경이 결정되었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원 실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동의하자, 김상태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법인 정관 변경은 붙임 정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사회의를 끝마치다. (폐회 18:00)

2012. 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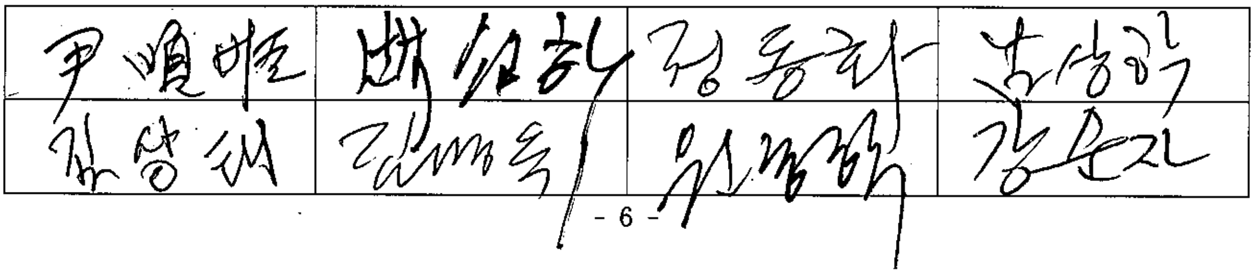

학교법인 숭의학원 이사장 윤 순 희

이 사 백 성 희

이 사 정 동 화

이 사 강 순 자

이 사 남 상 학

이 사 김 상 태

이 사 원 종 학

이 사 김 명 옥

감 사 안 성 용

< 별 첨 >

2011학년도 각학교 학교비 및 법인 결산(안) 총괄표

학교법인 숭의학원 (단위 : 원)

구 분 / 학교별		세 입 (수 입)	세 출 (지 출)	이 월 금	비 고
유 치 원		477,338,899	393,259,345	84,079,554	
초등학교		6,081,186,252	4,782,136,375	1,299,049,877	
중 학 교		3,377,085,033	3,296,155,647	80,929,386	
고등학교		7,249,816,987	7,115,749,674	134,067,313	
대학	등록금	31,600,700,707	31,600,700,707	(4,335,748,644)	내부거래 6,175,017,860원
	기 금	8,472,526,436	8,472,526,436	(506,880,545)	
	계	33,898,209,283	33,898,209,283	(4,842,629,189)	
법 인		584,528,957	584,528,957	(93,764,877)	
합 계		51,668,165,411	50,070,039,281	1,598,126,130 (4,936,394,066)	

※ 대학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며,
대학과 법인은 복식부기회계로 ()금액은 미사용차기이월자금임.

감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숭의여자대학 부설유치원 5. 숭의여자전문대학 (교명은 숭의여자대학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숭의여자대학교 부설유치원 5. 숭의여자전문대학 (교명은 숭의여자대학교라 한다)
제20조의4(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대학 평의원회에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구성한다.	**제20조의4(추천위원회)**①추천위원회는 숭의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구성한다.
제35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4년으로하여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유치원장 및 대학장은 2년으로 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대학의 경우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대학 교원 중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의 임용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⑥대학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4년으로하여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유치원장 및 대학교의 장은 2년으로 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대학교의 경우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대학교 교원 중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의 임용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⑥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의3(신규채용 등) ③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대학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신규채용 등)** ③대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대학교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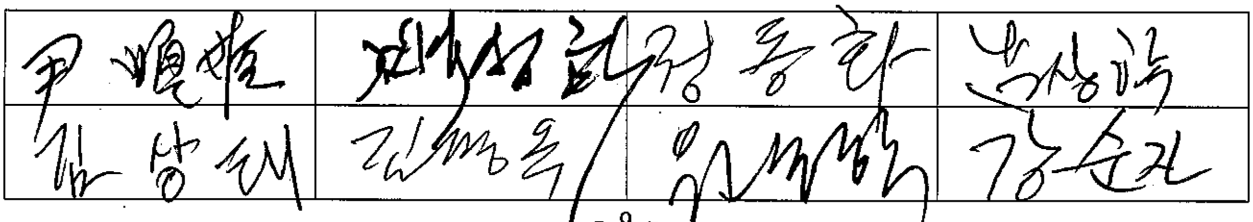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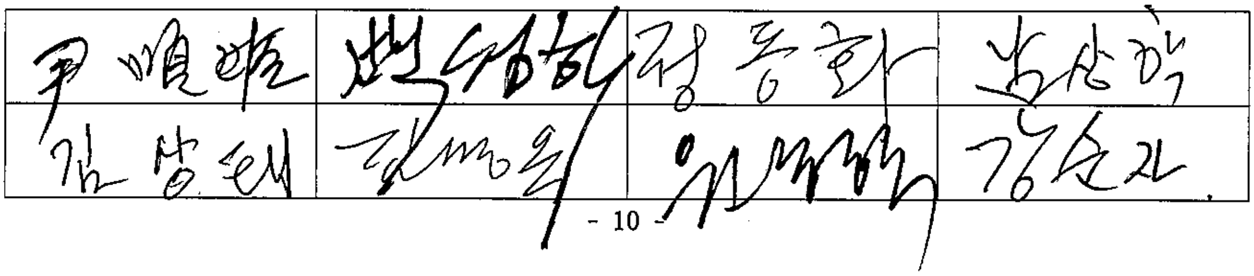
제36조(특별채용)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36조(특별채용)**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42조(정년) ①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의 정년은 62세, 대학 교원은 65세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42조(정년)** ①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의 정년은 62세, 대학교 교원은 65세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1. 대학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1. 대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74조(총장 등) ①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제74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제75조(하부조직) ①대학에 교목실과 대외협력실을 두고, 대학본부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및 총무처를 둔다.	**제75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목실과 대외협력실을 두고, 대학교 본부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및 총무처를 둔다.
제76조(부속기관) ①대학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제76조(부속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제100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0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5조(평의원회의 기능)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05조(평의원회의 기능)**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